

전주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나108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나10817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가소2948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3. 3. 8.

판결선고 2023. 4. 5.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가소2948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2. 9. 원고가 압수당했다가 가환부되어 전주교도소에 보관 중이던 18K 금팔찌(이하 ‘이 사건 팔찌’라 한다)를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전주교도소로부터 수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팔찌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팔찌의 가액인 6,300,000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팔찌를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전주교도소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를 증여 받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팔찌를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팔찌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와 원고는 연인관계였고 피고는 원고가 구속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원고를 접견하며 원고의 심부름을 한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편지에 ‘내 팔찌, 목걸이, 팔찌 그게 차기 싫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팔찌를 증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설민수, 판사 고연금